

● 제308회 ●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결산 및 기금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2. 6. 14.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서울특별시장 제출】

의안번호 3258, 3260

I. 결산안 개요

1. 제안경과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나. 제출일 : 2022. 5. 30.

다. 회부일 : 2022. 6. 3.

II. 결산현황

1. 세입결산

○ 예산현액 : 1,433,296백만원

○ 징수결정액 : 1,430,402백만원

○ 실제수납액 : 1,420,078백만원

○ 미수납액 : 10,324백만원

○ 결손처분 : 해당없음

○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수납액비율은 99.3%(전년도 99.6%)임.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 내역〉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율 (B/A)
합 계	1,433,296	1,430,402	1,420,078	0	10,324	99.3
일 반 회 계	1,421,979	1,419,563	1,409,239	0	10,324	99.3
세 외 수 입	73,590	92,438	82,114	0	10,324	88.8
경 상 적 세 외 수 입	564	826	741	0	85	89.7
임 시 적 세 외 수 입	73,026	91,539	81,373	0	10,166	8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0	73	0	0	73	0
지 방 교 부 세	240	300	300	0	0	100.0
지 방 교 부 세	240	300	300	0	0	100.0
보 조 금	1,008,300	985,473	985,473	0	0	100.0
국 고 보 조 금 등	1,008,300	985,473	985,473	0	0	10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39,849	341,352	341,352	0	0	100.0
보 전 수 입 등	3,965	5,468	5,468	0	0	100.0
내 부 거 래	335,884	335,884	335,884	0	0	100.0
균 형 발 전 특 별 회 계	11,317	10,839	10,839	0	0	100.0
보 조 금	11,317	10,839	10,839	0	0	100.0
국 고 보 조 금 등	11,317	10,839	10,839	0	0	100.0

2. 세출결산

- 예 산 액 : 2,857,993백만원
- 예산증감 : 12,442백만원
- 예산현액 : 2,870,435백만원
- 지 출 액 : 2,784,908백만원
- 이 월 액 : 1,874백만원
- 보조금반납금: 4,250백만원
- 불 용 액 : 79,403백만원

-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 2.8%(전년도 3.1%)가 발생

〈2021회계연도 불용사유별 불용액 현황〉

(단위 : 백만원)

불용액	원 인 별					
	보조금 정산잔액	예산절감액	계획변경등 집행사유 미발생	낙찰차액	지출잔액	예비비
79,403	26,935	-	34,112	334	18,022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세출결산 총괄〉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률 (B/A)	다음연도 이월액 (C)	보조금 반납금 (D)	집행잔액 (E=A-B -C-D)	불용률 (E/A)
합 계	2,857,993	2,870,435	2,784,908	97.0	1,874	4,250	79,403	2.8
일 반 회 계	2,802,373	2,805,407	2,728,270	97.3	295	2,920	73,922	2.6
여성정책담당관	65,945	66,015	65,601	99.4	0	0	414	0.6
여성권익담당관	44,013	44,013	42,370	96.3	0	367	1,276	2.9
보 육 담 당 관	1,839,855	1,839,855	1,800,432	97.9	129	0	39,294	2.1
가 족 담 당 관	667,607	667,996	649,423	97.2	152	1,483	16,938	2.5
아이돌봄담당관	159,882	162,457	145,786	89.7	14	1,032	15,625	9.6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4,357	24,357	24,054	98.8	0	38	265	1.1
아 동 복 지 센 터	714	714	604	84.6	0	0	110	15.4
균형발전특별회계	55,620	65,028	56,638	87.1	1,579	1,330	5,481	8.4
보 육 담 당 관	44,950	44,950	43,232	96.2	0	0	1,718	3.8
아이돌봄담당관	10,670	20,078	13,406	66.8	1,579	1,330	3,763	18.7

가. 예산 이용 : 해당없음

나. 예산 전용 : 20건, 1,066백만원

다. 예산 이체 : 4건, 1,288백만원

라. 예산의 변경사용 : 21건, 3,301백만원

마. 예비비 사용 : 해당없음

바.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 명시이월 : 해당없음

- 사고이월 : 4건, 1,874백만원

사. 국고보조금 집행 : 138개 사업, 991,157백만원 집행

〈2021회계연도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회계구분	보조금수령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합 계	995,550	991,157	76	4,317
일반회계	983,661	980,598	76	2,987
당해연도	983,661	980,598	76	2,987
균형발전 특별회계	11,889	10,559	0	1,330
당해연도	10,839	9,509	0	1,330
명시이월	1,050	1,050	0	0

3. 기금결산

○ 성평등기금 당해연도말 조성액 : 23,514백만원

- 전년도말 조성액 : 24,341백만원

- 당해년도 조성액 : 374백만원

- 당해년도 사용액 : 1,201백만원

- 당해년도말 조성액 : 23,514백만원

〈2021회계연도 성평등기금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2020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⑤=①+②
		계 ②=③-④	당해연도 조성액 ③	사 용 액 ④	
성 평 등 기 금	24,341	△827	374	1,201	23,514

4. 채권현재액 : 88,691백만원

5. 채무결산 : 해당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실국별 관리 공유재산은 총 34,513,920만원 상당의 금액임

- 건물 889,766㎡ 9,650,593만원,
- 기타 54건 29,270,444만원,

〈2021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합 계	345,139	44,071	-	389,210	
행정 재산	계	343,656	43,671	-	387,327
	공용재산	230,668	39,277	-	269,945
	공공용재산	112,988	4,394	-	117,382
	기업용재산	-	-	-	-
	보존재산	-	-	-	-
일반재산	1,483	400	-	1,883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2021년도말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관리 정수물품은 수량 115개,
현재액 407백만원임

〈2021회계연도 정수물품증감 및 현재액〉

(단위:수량-개, 금액-백만원)

구분	2020년도말 보유현황		당해년도 증감액						2021년도말 보유현황
			증가			감소			
			구매	관리전환	소계	매각	관리전환	소계	
합계	수량	114	13	-	13	-	12	12	115
	금액	366	58	-	58	-	17	17	407
일반회계	수량	114	13	-	13	-	12	12	115
	금액	366	58	-	58	-	17	17	407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한광모)

1. 세입 결산 검토

가. 세입결산 총괄

1) 2021회계연도 세입결산 개요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예산현액은 1조 4,332억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 4,304억원임. 징수결정액 가운데 실제수납액은 1조 4,200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03억원으로, 징수율은 99.3%로 나타남.

〈표 1-1〉 2021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실제수납액 (C)	미수납액 (B-C)	징수율 C/B (%)
2021년	1,433,296	1,430,402	1,420,078	10,324	99.3
2020년	1,754,002	1,695,260	1,688,767	6,492	99.6
2019년	1,420,548	1,427,958	1,422,040	5,917	99.6
2018년	1,181,619	1,191,123	1,185,404	5,719	99.5
2017년	1,066,155	1,069,156	1,062,939	6,218	99.4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주요 세입원은 ‘보조금’과 ‘보전수입등

및내부거래'로 이루어짐.

- 구체적으로, '보조금'의 경우, 전체 세입의 3/2에 해당하는 71.1%(1조 196억 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23.7%(3,398억원)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남.

〈표 1-2〉 2021회계연도 주요 세입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1		2020		2019		2018		2017	
	금 액	구성비 (%)								
합 계	1,433,296	100.0	1,754,002	100.0	1,420,548	100.0	1,181,619	100.0	1,066,155	100.0
세외수입	73,590	5.1	69,501	4.0	57,185	4.0	25,654	2.17	19,937	1.9
보조금	1,019,617	71.1	1,287,630	73.4	1,009,178	71.0	784,818	66.4	688,137	64.5
보전수입등 내부거래	339,849	23.7	373,371	21.3	354,184	24.9	370,747	31.4	358,081	33.6
지방 교부세	240	0.0	-	-	-	-	400	0.03	-	-
지방채	-	-	23,500	1.3	-	-	-	-	-	-

2) 최근 5년간 세입결산 추이 및 특징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 결산 추이(표 1-1 참조)를 살펴보면, 2017년 1조 662억원이던 것이 2021년에는 1조 4,333억원으로 34.4% 증가함.
- 2014년 이후 보조금의 규모가 전체 세입의 2/3%가량을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는 무상보육정책의 단계적 확대에 따른 국가보조금의 증가와 누리

과정에 대한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 증가한데 기인한 것임.

○ 한편, 최근 5개년 동안의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원천 추이(표 1-2 참조)를 살펴보면,

- 주요 세입원의 하나인 ‘국고보조금’의 경우, 2020년 코로나19 관련 보건복지부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이 빠지면서 2020년 1조 2,876억원에서 2021년 1조 196억원으로 20.8% 감소하였지만 2017년 6,881억원 대비 48.2% 증가하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14년도부터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새로운 세입 항목으로 신설되었는데, 이는 과거 만0~5세 아동에 대한 보육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국고보조금을 통해 교부되어 왔던 것이, 2013년 이후부터는 만3~5세 누리과정 보육료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으로부터 내부거래로 전입되도록 관련 제도가 변경됨에 따른 결과임.
-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은 2017년 3,581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3,398억원으로 5.1% 감소하였으며, 전체 세입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2017년 33.6%에서 2021년 23.7%로 줄어들었는데 이는 저출생 여파로 인한 누리과정 아동수 및 보육교사 감소로 기인한 것임.

나. 세부항목별 검토의견

1) 미수납액 저감 대책 필요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징수율(표 1-1참조)은 99.3%로 대체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최근 5년 간의 연도별 세입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미수납액은 2017년 62억원에서 2018년 57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19년 59억원, 2020년 6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1년에는 103억원으로 2017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추세에 있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미수납액의 절대액이 2021년 기준 103억원으로 최근 5년 간 추이와 비교할 때 그 규모가 가장 크며, 미수납액 저감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2)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에 대한 적극적 징수대책 필요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미수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주요 예산항목은 관항목인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이는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 ‘지난연도수입’ 및 ‘그외수입’목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대부분의 미수납액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음.

- 2021년의 경우,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634억원으로 추계되었으나, 이후 실제 징수결정액은 예산액의 123.4%에 해당하는 789억원으로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실제수납액은 696억원으로, 총 93억원이 미수납 처리되어 다음연도로 이월됨. 따라서 징수율은 88.2%로 기록됨.

〈표 1-3〉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세입 조서

(단위 : 백만원, %)

구분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A)	실제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	징수율 (B)/(A) (%)
임시적세외수입	73,026	73,026	91,539	81,373	-	10,166	88.9
불용품매각대금	-	-	3	3	-	-	100.0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63,417	63,417	78,870	69,589	-	9,281	88.2
자체보조금반환수입	0	0	5,218	5,183	-	35	99.3
그외수입	3,539	3,539	1,370	1,194	-	176	87.1
자녀연도수입	6,070	6,070	6,078	5,404	-	674	88.9

- 시·도비반환금의 대부분은 보육료,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등 주로 보육분야 시비보조금과 관련되며,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입결산의 미수납 총액(103억원) 중 89.9%(93억원)가 바로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에서 발생하고 있음.
- 특히 보육담당관의 시·도비보조금반환금 미수납액이 72%(66억원), 아이돌봄담당관의 미수납액이 21%(19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 보

육 및 돌봄분야 예산에 대한 자치구 회수 반환금에 대하여 보다 철저한 반환 요구를 통해 적극적 징수 노력 및 징수 대책이 요구됨.

〈표 1-4〉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미수납액 발생 현황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실제 수납액(B)	미수납액 (A-B)	과부족액 상세사유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63,417,021	78,869,731	69,588,982	9,280,748	· 자치구 시비보조금 반납금으로 납기 미도래 및 자치구 재정형편상 '21년 추경예산 반납 곤란하여, '22년 예산편성 후 반납 예정에 따라 발생
양성평등정책담당관	186,282	200,632	200,632	-	· 해당없음
권익보호담당관	116,340	1,024,163	956,227	67,935	· 2020년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지원사업, 가정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시비보조금 미반납
보육담당관	50,928,570	60,125,021	53,485,950	6,639,071	· 국공립어린이집 확충(1,039백만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및 운영지원(3,454백만원), 보조교사 지원(835백만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188백만원), 시간제 보육 지원(62,524백만원), 대체교사 지원 (23백만원) 등 자치구 보조사업 정산잔액 미수납액
가족담당관	9,070,673	4,962,708	4,365,455	597,254	· 아동급식 지원사업(350백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31백만원) 등 시비보조금 정산잔액 미반납
아이돌봄담당관	1,781,509	11,271,535	9,329,713	1,941,822	· '20년도 아이돌봄 지원사업(1,110백만원), '20년도 우리동네보육반장(10백만원) 등 미반납
외국인다문화담당관	1,333,647	1,285,672	1,251,006	34,666	·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업 집행잔액 미납(19백만원), 그외 납기미도래

3) 소극적 세입 추계 문제 개선 등 과학적 추계 철저 필요

- 세입추계와 관련하여, 예산액은 예산 계획상 예산추계를 통한 산정액이고, 징수결정액은 실제 징수결정된 금액을 말함.
 -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상 격차가 최소가 될 경우 예산액 상의 추계가 보다 더 면밀한 것이라 할 것이며, 세입의 정확한 추계는 결국 유용가능한 세출 재원의 확보로 이어지므로, 보다 과학적이고 정확한 예산세입 추계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임.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주로 ‘20년 자치구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액(634억원)과 실제 징수결정액(789억원)은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며, 최근 3년 결산액의 평균치 기준으로 추계하는 예산액과 실적보고서 제출 후 확정되는 실제 징수결정액과의 차이가 매년 발생하고 있어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보다 정확한 예산세입 추계가 필요함.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의 예산액과 실제수납액 간 상당한 차이가 나타나는 항목들이 다소 발견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요구됨.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1억원이상 차이가 나는 항목이 9개(표 1-5 참조)가 발생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 항목으로, 예산현액은 634억원이지만, 실제수납액은 696억원으로 이들 간의 차액은 무려 62억원에 이르고 있음. 이는 해당 징수결정액 중 자치구에서 반환금 예산을 적기에 편성하지 못하여 미납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 할 것임.

-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은 무상보육 관련 예산의 반환금 및 미수납금의 증가와 밀접히 관련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이미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전 결산 심사에서 전면 무상보육이 실시 이후 이와 관련된 보육료등의 반납금은 2015회계연도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을 고려하여 이에 따른 세입추계 철저 및 반환금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예산운용 방안이 강구될 필요가 있음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바 있음.
-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과다한 차이가 나는 항목이 다수 존재하는 바 (20%이상 차이, 8건 항목, 표1-6참조), 앞으로 세입추계 상의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과학적이고 면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표 1-5〉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1억원이상 차이발생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이자수입	513	755	672	159	·'18.11월 아이돌봄담당관 부서 신설에 따라 연차별 결산액 데이터 부재로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였음(과소 추계되어 초과수납 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	63,417	78,870	69,589	6,172	·'20년 자치구 보조금에 대한 정산잔액 반납금으로 최근 3년 결산액의 평균치로 예산 추계하였으나, 코로나19 관련 전반적인 집행 차질로 구별 잔액발생 증가
	자체보조금반환 수입	-	5,217	5,183	5,183	· 민간단체 보조금 잔액반납을 위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목 신설('21.1월)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그 외수입	3,539	1,370	1,194	△2,345	· 연도별 징수액의 변동폭이 커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므로 최근 3년 결산(전망)액 평균 등으로 추계하였으나 민간단체 보조금 잔액반납을 위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목 신설('21.1월) 등의 사유로 실제 세입이 그보다 적게 징수됨
	지난연도수입	6,070	6,078	5,404	△666	· '21년도 이전 부과건에 대한 수납내역으로 대부분 자치구 보조사업 정산잔액 미수납이며 본예산 및 추경 편성 통해 납부 독려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953,653	932,938	932,938	△20,715	· 중앙부처 변경내시(감액)에 따른 국비 실수령액 감소
	기금	52,735	50,723	50,723	△2,012	· 중앙부처 변경내시(감액)에 따른 국비 실수령액 감소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국가보조금사용 잔액	3,965	5,468	5,468	1,503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 전 부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정확한 세입추계 한계(2022년부터 부서별 편성 방식으로 변경)
보조금 (균특)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11,317	10,839	10,839	△478	· 중앙부처 변경내시(감액)에 따른 국비 실수령액 감소

〈표 1-6〉 예산액 대비 실제수납액상 20%이상 차이발생 과목별 현황

(단위: 백만원)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세외수입	경상적 세외수입					
	기타사용료	-	12	12	12	서울여성공예센터 내 카페 운영재개(코로나19 관련 '21.1.1. 字 운영 중단)에 따

예산과목		예산액 (a)	징수 결정액 (b)	실제 수납액 (c)	과부족액 (c-a)	과부족 상세사유
						라, 사용수익허가자 신규 선정으로 사용료 결산액 발생
	기타사업수입	39	47	47	8	안심택배함 장기보관 물품 증가에 따른 초과보관료 수입 증가
	기타이자수입	513	755	672	159	"18.11월 아이돌봄담당관 부서 신설에 따라 연차별 결산액 데이터 부재로 정확한 추계가 곤란하였음(과소 추계되어 초과수납 발생)
	임시적 세외수입					
	불용품매각대금	-	3	3	3	부서 노후 공용차량 교체에 따른 매각대금 발생
	자체보조금반환 수입	-	5,217	5,183	5,183	민간단체 보조금 잔액반납을 위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목 신설('21.1월)
	그 외수입	3,539	1,370	1,194	△2,345	연도별 징수액의 변동폭이 커서 정확한 추계가 어려우므로 최근 3년 결산(전망)액 평균 등으로 추계하였으나 민간단체 보조금 잔액반납을 위한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목 신설('21.1월) 등의 사유로 실제 세입이 그보다 적게 징수됨
지방교부세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240	300	300	60	행정안전부 주최 202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지원 우수사례('21.10월) 및 적극행정 우수사례('21.12월) 수상에 따른 재정 인센티브 수령으로 추가 결산액 발생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보전수입 등					
	국가보조금사용 잔액	3,965	5,468	5,468	1,503	양성평등정책담당관에서 전 부서 국고보조금사용잔액을 일괄 편성함에 따라 정확한 세입추계 한계(2022년부터 부서별 편성 방식으로 변경)

4)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국고보조금 교부로 인한 건전재정 훼손

- 2021회계연도 세입예산의 국고보조금이 과소 교부되거나 미교부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바(표 1-7 참조), 세입의 71.1%가 국고보조금등으로 충당되는 여성가족정책실 예산의 특성상 중앙정부 차원에서의 미흡한 예산추계에 서 비롯된다는 점을 지적해 볼 수 있을 것임. 향후 중앙부처에 다양하고 적극적인 건의와 논의를 통해 지속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표 1-7〉 국고보조금 과소 및 미교부 사유

(단위: 천원)

연도	사업명(예산과목)	총사업비			보조금수령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총 18건	981,756,899	437,260,123	544,496,776	958,323,202	413,826,426	544,496,776	
1	여성 노숙인 시설 운영	6,957,362	2,645,686	4,311,676	6,938,844	2,627,168	4,311,676	노숙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공모 선정 결과에 따른 국비 변경내시(감액)
2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69,882	189,713	180,169	368,284	188,115	180,169	성폭력피해자 비수급자 생계비 국비 변경내시(감액)
3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4,040,872	1,890,836	2,150,036	3,842,788	1,692,752	2,150,036	북부해바라기센터 종료('21.2월)에 따른 국비 변경내 시(감액)
4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281,170	140,585	140,585	253,515	112,930	140,585	북부해바라기센터 종료('21.2월)에 따른 국비 변경내 시(감액)
5	어린이집 운영지원(보조)	2,251,500	855,000	1,396,500	1,922,500	526,000	1,396,500	복지부 기준 변경(지원 대상 감소)에 따른 감내시로 국비 최종내시액 감소
6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152,059,847	25,009,381	127,050,466	151,185,847	24,135,381	127,050,466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이용 아동 감소로 따라 국비 감 내시 통보(11.5)
7	영유아 보육료 지원	627,891,823	338,122,000	289,769,823	610,325,823	320,556,000	289,769,823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이용 아동 감소로 따라 국비 감 내시 통보(10.15)
8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	40,000,000	8,250,000	31,750,000	39,522,674	7,772,674	31,750,000	보건복지부 변경내시(12차, '21.12.14.)에 따른 수령액 감소
9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생활SOC 복합화)	4,950,000	1,092,000	3,858,000	4,949,500	1,091,500	3,858,000	보건복지부 계획 변경에 따라 편성예산과 확정내시('21.4.13.) 간 금액 차이로 수령액 감소
10	자치구 가족센터 건립	3,600,000	1,912,000	1,688,000	3,500,000	1,812,000	1,688,000	여성가족부 국비 감액내시 통보('21.12.23.)

연도	사업명(예산과목)	총사업비			보조금수령액			미교부 및 과소교부 상세사유
		계	국고	시비	계	국고	시비	
11	아동단독가구 및 가정위탁아동 상해 보험료 지원	60,554	30,277	30,277	60,177	29,900	30,277	보건복지부 국비 감액내시 통보(보건복지부 아동권 리과-5845, 2020. 12. 7.)
12	한부모가족 매입 임대주택 주거지원	144,904	144,904	-	124,600	124,600	-	인건비 감액에 따른 여성가족부 국비 감액변경내시 통보('21.3.24)
13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51,654,000	25,827,000	25,827,000	49,972,000	24,145,000	25,827,000	예산 집행액을 반영하여 여성가족부 국비 감액변경 내시 통보('21.10.14)
14	아이돌봄 지원	45,658,010	19,411,500	26,246,510	43,887,052	17,640,542	26,246,510	타 시도 예산부족으로 국비 변경내시 (감액)
15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3,925,122	65,312	3,859,810	3,862,690	2,880	3,859,810	당초 1개 세부사업[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국비65,312천원)]을 확정내시 온 국비보조사업에 맞게 3개 세부사업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국비 2,880천원),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인건비지원)(국비 42,432천원),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기자재비 지원)(국비 20,000천원)]으로 세분화하였으며,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 국비 수령액은 65,312천원으로 동일
16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보조)	33,910,700	10,173,210	23,737,490	33,854,516	10,117,026	23,737,490	보건복지부 변경내시(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3291, '21.6.1.) : 지역아동센터 아동수 감소에 따른 휴·폐업 등 지원 대상 변동 반영
17	지역아동센터 시도 지원단 운영	326,800	98,040	228,760	326,724	97,964	228,760	보건복지부 착오 지급 (매칭비율 국30:시70 미준수)
18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3,674,353	1,402,679	2,271,674	3,425,668	1,153,994	2,271,674	자치구에서는 신규 시설 운영 수요가 없었으나 여성가족부에서 신규시설 운영비 명목으로 일방 편성 (2021.10.28 변경내시)하여 추후 신규 시설 운영비 전액삭감으로 인한 불용

2. 세출 결산 검토

가. 세출결산 총괄

1) 2021회계연도 세출결산 개요

-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액은 2조 8,580억원이며, 예산 성립 후 이월액 등으로 증액된 예산현액은 2조 8,704억원임.
- 예산현액 가운데 지출액은 2조 7,849억원으로, 다음연도로 19억원을 이월하였으며, 남은 집행 잔액은 794억원으로 기록됨. 이에 따른 불용률은 2.8%로 나타남.

〈표 2-1〉 최근 5년간 세출 결산 총괄표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불용액 (B)	불용액비율 B/A(%)
2021	2,857,993	2,870,435	2,784,907	1,874	4,250	79,403	2.8
2020	3,214,314	3,235,679	3,119,565	12,706	5,414	97,994	3.0
2019	2,763,301	2,773,074	2,722,612	17,117	2,337	31,008	1.11
2018	2,437,654	2,442,506	2,350,600	9,773	1,150	80,983	3.33
2017	2,237,431	2,244,641	2,176,904	4,853		62,884	2.80

2) 최근 5년간 세출결산 추이 및 특징

- 세출결산 추이(표 2-1 참조)를 예산현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2017년 당시 2조 2,446억원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2조 8,704억원으로, 총 6,258억원이 증액된 바, 같은 기간 동안 27.9%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남.
 - 이 같은 세출 예산의 증가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전면 무상보육제도가 단계적으로 확장됨에 따라 이의 예산이 크게 증가한 것이며, 2018년부터는 만 6세이하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이 지원되면서 증가하였고, 2020년에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1년에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등의 재원마련을 위해 국고보조금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감소하였음.
- 최근 5년간 불용률은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다가, 2019년에는 1.1%로 감소하였고, 2020년에 3%로 급격히 증가 후 2021년도에도 2.8%로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음.

3) 최근 5년간 예산변경 추이

-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사업 중 각종 예산변경(전용, 이체, 변경사용)이 발생한 건 수는 총 45건으로 나타났고, 20%이상 불용률을 나타낸 사업은 총 9건으로 나타남.
 - 2021회계연도에는 전용 및 변경이 각각 20건 및 21건으로 전년에 비해

변경은 감소하고 전용은 증가했는데, 이는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확정통보에 따라 매칭 시비 확보와 코로나19로 인한 시설의 운영 손실을 일부 보전하기 위한 결과임.

- 이체 4건은 신설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¹⁾으로 1인가구 사업(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이 이관되면서 발생하였으며, 예산변경에 대한 최근 5년간의 추이는 아래 <표 2-2>와 같음.

<표 2-2> 최근 5년 간 각종 예산변경 추이

(단위 : 백만원, 건)

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사업 및 예산		이용		전용		이체		변경사용		예비비사용		불용 (20%이상)	
	사업수	예산현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1	203	2,870,435	-	-	20	1,066	4	△1,288	21	3,301	-	-	9	5,115
2020	209	3,235,679	-	-	15	899	-	-	31	8,301	9	4,249	18	5,261
2019	192	2,773,074	-	-	24	5,094	66	37,059	22	36,743	-	-	11	9,995
2018	172	2,442,507	-	-	10	619	22	66,312	12	23,098	-	-	13	3,366
2017	197	2,244,641	-	-	4	1,129	-	-	17	16,209	-	-	16	8,381

○ 여성가족정책실 예산변경 사항의 특징은 이용과 예비비사용은 전혀 없으나,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 연결망 구축 사업 관련 이체가 4건 13억원이 있으며, 변경사용은 지속적으로 늘고 줄고를 반복하고 있고, 전용은 2017년부터 건수와 금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났음.('17년 4건(11억원) → '18년 10건(6억) → '19년 24건(51억) → '20년 15건(9억) → '21년 20건(11억)).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시행 2021. 7. 19.] [서울특별시규칙 제4431호, 2021. 7. 19., 일부개정]

- 또한, 일부 사업에서 여전히 반복적으로 과다한 불용이나, 다년도 예산변경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2021회계연도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

- 2021회계연도 불용률을 부서별로 구분해보면, <표 2-3>과 같음.

<표 2-3> 부서별·집행잔액 발생 원인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1						2020	
	예 산 액	지출액	이월액	보 조 금 반납금	집행잔액		집행잔액	
					금액	불용률	금액	불용률
합계	2,870,435	2,784,907	1,874	4,250	79,403	2.8	97,994	3.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6,015	65,601	-		413	0.6	867	1.0
권익보호담당관	44,013	42,370	-	367	1,276	2.9	449	1.1
보육담당관	1,884,805	1,843,664	128	0	41,012	2.2	56,930	2.9
가족담당관	667,996	649,423	152	1,483	16,938	2.5	24,314	2.6
아이돌봄담당관	182,535	159,192	1,594	2,362	19,388	10.6	14,261	8.1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4,357	24,054	-	38	265	1.1	1,061	4.3
아동복지센터	714	604	-	-	110	15.4	113	9.5

- 불용률 수치를 비교해보면 양성평등정책담당관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각각 0.6%, 1.1%로 낮았으며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전년대비 불용률과 불용액이 3.2%p, 8억원이 감소하였음.

-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2021회계연도 여성가족정책실의 불용률과 불용액이 전년 대비 크게 감소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보육담당관과 가족담당관의 집행잔액이 각각 410억원, 169억원으로 감소하지 않는 것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음.
- 아이돌봄담당관 역시 불용률과 불용액이 전년에 비해 각각 2.5%p, 51억원 이상 증가하였으며, 여성가족정책실 평균인 2.8%와 비교해보면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음.
- 한편, 아동복지센터는 불용률이 15.4%로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중 가장 높은 불용을 기록하고 있음.

나. 세출결산 주요내역

1) 예산의 변경(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7조²⁾에 따라 세출예산에 정한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나, 예산편성 후 사정변경 내용을 매번 추경을 통해 편성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재정법」에서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제도를 두고 있음.

〈표 2-4〉 예산의 이용·전용·변경사용·이체 구분

구분	이용	전용	변경사용	이체
성격	과목 간 과부족의 응통 (예산의 목적 외 집행)			직무권한 등 변동 시 (조직개편 등으로 사업 소관 변경)
근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지방재정법」 제49조	-	「지방재정법」 제47조의2
적용범위	정책사업간 (총칙 명기 및 의회 의결)	단위사업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간 ·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간 · 동일 세부사업 내 목간 	세부사업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 세부사업 내 세목 간 	실·과·사업소간
요구권자	지방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사업담당자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의 장	실·국장, 사업소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이러한 예산 변경사용 제도를 집행부가 편의적으로 남용할 경우, 의회가

2) 「지방재정법」 제47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세출예산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심의한 예산의 취지와 목적을 의회 동의 없이 집행부가 임의로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는 바, 이로 인해 의회의 예산심의 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예산 변경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예산 변경의 사유를 명확히 파악하여 그 필요성을 꼼꼼히 따져보고, 의회 보고 등 그 절차와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 등을 제대로 판단하여 집행부가 자의적이고 편의적으로 예산변경제도를 남용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할 것임.

가) 예산전용

- 예산전용이란 「지방재정법」 제49조³⁾의 규정에 의거, 각 항 내의 예산액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간의 예산을 변경 사용하는 것으로, 2021회계연도 예산의 변경 현황을 살펴보면, 전용은 총 20건으로 전용금액은 11억 원으로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표 2-5>와 같음.

-
- 3) 「지방재정법」 제49조(예산의 전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轉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서에 명시하고, 그 이유를 적어야 한다.

〈표 2-5〉 2021회계연도 예산 전용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일자	전용사유
			감	증		
◇ 총 20건			1,065,805	1,065,805		
여성이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	201-01 사무관리비	606,120	37,000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전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555,417	-	37,000		
성별임금격차 해소 성평등 노동정책 구현	201-01 사무관리비	49,800	11,000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전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592,417	-	11,000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드는 성평등 서울	201-01 사무관리비	3,000	1,849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전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541,767	-	1,849		
서울시 여성역사 공유공간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2,400	2,301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전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543,616	-	2,301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여성 근로자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	137,400	9,500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전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545,917	-	9,500		
여성발전센터 운영	402-03 민간위탁사업비	394,198	133,510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전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332,257	-	133,510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138,000	10,000	-	03-2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비대면 국제포럼 수행주체(직접수행) 변경에 따른 동일사업 내 타통계목에서 전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201-01 사무관리비	3,000	-	10,000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자	전용사유
			감	증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232,000	94,000	-	03-26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념의 날 기념 비대면 국제포럼 수행주체(직접수행) 변경에 따른 동일사업 내 타통계목에서 전용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 추진	201-03 행사운영비	-	-	94,000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59,080	3,300	-	11-03	여성가족부 '21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국립기능보강」 사업의 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5,300	-	3,300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3,181,058	188,000	-	11-03	여성가족부 '21년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신규)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198,090	-	188,000		
성폭력피해자 방문상담, 돌봄, 부대비용 지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	269,170	10,090	-	11-03	여성가족부 '21년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신규) 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해바라기센터 신규설치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386,090	-	10,090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2,857,360	100,000	-	11-02	어린이집 방역물품(열화상카메라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발생 및 코로나19로 인한 영아의 언어발달 지원을 위해 소모품성격인 투명마스크를 지원하고자 예산 전용
어린이집 기능보강 (자체)	201-01 사무관리비	-	-	100,000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6,041,517	76,877	-	08-13	市 아동복지센터가 거점심리치료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심리치료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40,000	-	76,877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승인자	전용사유
			감	증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6,100,453	58,936	-	08-13	市 아동복지센터가 거점심리치료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심리치료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	58,936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9,370	14,105	-	08-13	市 아동복지센터가 거점심리치료센터 수행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심리치료 사업 추진을 위해 전용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16,877	-	14,105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76,434,747	190,377	-	03-16	보건복지부의 낮은 확정내시로 본예산 미반영, 21.4월 준공 예정임에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매칭분 전용 (가족담당관-6396호, 2021.3.12.)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	-	190,377		
상담 조사 시설 한시지원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0,000	60,000	-	03-11	국비확정내시에 따른 예산조정 반영시 통계목 착오 편성
상담 조사 시설 한시지원	403-01 자치단체자본보조	-	-	60,000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자체)	201-01 사무관리비	366,200	28,000	-	11-23	여성가족부의 2021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변경내시 확정통보에 따라 매칭시비 부족분(28,000천원) 발생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245,256	-	28,000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735,191	30,000	-	05-12	시유재산인 성동외국인노동자센터 화재안전성능보강공사 완료를 위해 필요한 설계용역비 등 반영
외국인주민 지원시설 설치·운영	401-01 시설비	-	-	30,000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308-01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960	6,960	-	08-10	다문화가족 정책개발자문회의 실시(3회), 자조모임 사례발표회 소요예산 추가 확보(1건)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16,500	-	6,960		

나) 예산 변경사용

- 예산의 변경사용이란 동일 단위사업 내 세부사업 간 또는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통계목) 간 예산을 실·국장 책임하에 상호 융통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할 경우는 변경사용이 아닌 전용에 해당됨.
- 변경사용은 총 21건, 33억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4>와 같음.

<표 2-6> 2021회계연도 예산 변경사용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일자	변경사유
			감	증		
◇ 총 21건			3,301,298	3,301,298		
여성인력개발센터 지정운영	307-03 민간단체법정 운영비보조	4,781,453	6,000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변경사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65,767	-	6,000		
서울여성공예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2,087,650	70,000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변경사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471,767	-	70,000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4,780,031	30,000	-	12-20	코로나19로 인한 여성발전센터 휴관 장기화에 따른 자체수입 손실금 보전을 위해 타사업 및 타통계목에서 변경사용
여성발전센터 운영	307-05 민간위탁금	6,302,257	-	30,000		
여성가족정책 거버넌스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82,482	7,500	-	12-09	서울시 양성평등 인식조사 실시 관련 소요예산 변경에 따른 사무관리비 부족분 확보
성주류화 기반조성	201-01 사무관리비	216,800	-	7,500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993,058	18,198	-	11-03	여성가족부 '21년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예에 따른 국비 및 매칭시비 확보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307-05 민간위탁금	859,814	-	18,198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 일자	변경사유
			감	증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2,974,860	5,000	-	11-03	여성가족부 '21년 「성 폭력피해자 의료비, 간 병비 지원」 사업의 국 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성폭력피해자 의료 비, 간병비 지원	307-11 사 회복지사업 보조	806,076	-	5,000		
여성긴급전화 1366 서울센터 운영지원	307-05 민 간위탁금	1,184,498	6,802	-	10-13	여성가족부 2021년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업」(직업훈련비) 국 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매칭 시비 확보
가정폭력피해자 직 업훈련비 지원	307-11 사 회복지사업 보조	48,976	-	6,802		
지역아동보호전문기 관 운영지원	307-05 민 간위탁금	5,964,640	3	-	08-13	제4차 간주처리 시 착오 편성된 국비(3천원)분 예산 통계목 변경
지역아동보호전문기 관 운영지원	308-01 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325,265	-	3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9,383,565	750,000	-	11-12	가 족 담 당 관 -24490(2021.11.11.). 그룹홈 특성상 시설의 자은 신규설치 및 폐업, 종사자 이직 등으로 인 건비 부족분 발생 변경
요보호아동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8,070,802	-	750,000		
아동단독가구 및 가 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 회보장적수 혜금	4,505,080	23,424	-	10-05	가정위탁지원센터 이전 및 홈페이지 리뉴얼 등 에 따른 예산 확보
가정위탁센터, 입양 기관, 결연기관 운영 지원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1,353,889	-	23,424		
아동단독가구 및 가 정위탁아동 지원	301-01 사 회보장적수 혜금	4,481,656	101,550	-	10-05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 책과-3120 (2021.7.23.) 변경 내시 통보에 따른 시비매칭분 확보
입양아동가족지원(보 조)	301-01 사 회보장적수 혜금	3,837,430	-	101,550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9,717,341	120,000	-	10-13	가 족 담 당 관 -21839(2021.10.8.). 복 지부의 늦은 변경내시로 추경 미반영, 원활한 사 업추진을 위해 시비 매 칭분 변경
아동 발달 지원 계좌 지원	301-01 사 회보장적수 혜금	1,784,290	-	120,000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 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9,597,341	162,650	-	11-03	가 족 담 당 관 -23801(2021.11.3.). 복 지부의 늦은 변경내시 (인건비 부족)로 추경 미반영, 원활한 사업추 진을 위해 시비 매칭분 변경
취약계층 아동통합 서비스 지원	308-01 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7,663,282	-	162,650		

(단위 : 천 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승인 일자	변경사유
			감	증		
아동복지시설 운영 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79,434,691	51,126	-	11-10	가족담당관 -24147(2021.11.8.). 복지 지부의 낮은 변경내시 (인력13명 증가)로 추경 미반영, 원활한 사업추 진을 위해 시비 매칭분 변경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08-01 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2,289,926	-	51,126		
청소년 방과후아카 데미 운영지원	308-01 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429,097	12,000	-	11-23	여성가족부의 2021년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변 경내시 확정통보에 따른 예산확보
청소년 방과후아카 데미 운영지원	307-05 민 간위탁금	3,273,256	-	12,000		
거점형 키움센터 운 영	307-05 민 간위탁금	3,046,152	1,448,767	-	01-07	국비 예산과목 세분화에 따른 인건비, 기자재비 별도 세부사업 편성
거점형 키움센터 운 영(인건비 지원)	307-05 민 간위탁금	0	-	1,448,767		
거점형 키움센터 운 영	402-03 민 간위탁사업 비	400,000	400,000	-	01-07	국비 예산과목 세분화에 따른 인건비, 기자재비 별도 세부사업 편성
거점형 키움센터 운 영(기자재비 지원)	402-03 민 간위탁사업 비	0	-	400,000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308-01 자 치단체경상 보조금	44,000	34,000	-	08-10	코로나 상황 지속으로 의료통역 지원, 저소득 층 진료비 지원 등 다문 화가족 출산전후 돌봄서 비스 수요 증가에 대응 (1건)
다문화가족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307-02 민 간경상사업 보조	70,000	-	34,000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401-01 시 설비	2,742,870	23,068	-	11-24	3호(종로) 거점형 키움 센터 감리비 증가에 따 른 예산 확보, 5호(성북) 거점형 키움센터 설비분 야 감리용역비 부족에 따른 예산 확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401-02 감 리비	61,825	-	23,068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401-01 시 설비	2,767,870	25,000	-	03-26	3호(종로) 거점형 키움 센터 감리비 증가에 따 른 예산 확보, 5호(성북) 거점형 키움센터 설비분 야 감리용역비 부족에 따른 예산 확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401-02 감 리비	36,825	-	25,000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401-03 시 설부대비	6,210	6,210	-	11-24	3호(종로) 거점형 키움 센터 감리비 증가에 따 른 예산 확보, 5호(성북) 거점형 키움센터 설비분 야 감리용역비 부족에 따른 예산 확보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균형발전특별회계)	401-02 감 리비	84,893	-	6,210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부모가 없거나 여건상 키우기 어려운 보호대상 아동에게 양육환경 조성을 통해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육성 지원을 목적으로, 「아동복지법」 제59조(비용 보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시설종사자 인건비, 관리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2021회계연도 당초 예산액은 966억 5,870만원으로, 이후 예산 집행과정에서 12억 7,415만원을 감액 조정(전용 1건, 변경4건)한 예산현액은 953억 8,455만원이고, 지출액은 859억 4,872만원을 사용하여 불용율은 9.9%(불용액 94억 3,583만원)로 기록됨.

〈표 2-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2021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액 (추경포함)	전용사용	변경사용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율 (%)
계	96,658,700	△190,377	△1,083,776	95,384,547	85,948,721	9,435,825	9.9
201-01 사무관리비	61,600	-	-	61,600	50,507	11,093	18
203-03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3,870	-	-	3,870	3,862	7	0.2
307-05 민간위탁금	16,685,512	-	-	16,685,512	14,478,503	2,207,009	13.2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79,907,718	△190,377	△1,083,776	78,633,565	71,415,849	7,217,716	9.2

나) 다른 사업을 위한 13억원 감변경하고도 불용액 94억원 발생

- 2021회계연도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사업은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국가보조금 교부로 시비 예산 확보(1억 9,038만원)를 위한 전용 외에도 ① 요보호아동 그룹홈 시설의 잦은 신규설치 및 폐업, 종사자 이직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7억 5,000만원), ②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1억 2,000만원), ③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1억 6,265만원) 및 ④아동보호전담 요원 충원(5,113만원) 사업 추진을 위한 시비 매칭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해 총12억 7,415만원을 감액 변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94억원에 달하는 불용액이 발생하였음.

〈표 2-8〉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예산전용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사유
				감	증	
201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1,556,556	300,000		.한부모가족 자녀 양육비 등 지원 시비부담금 확보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301-01 사회보장적 수혜금	44,529,032		300,000	
202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76,434,747	190,377		.국시비 50:50 매칭 사업으로 보건복지부 확정내시가 늦게 이루어짐에 따라 원활한 사업추진(4월 준공)을 위해 시비 예산 확보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402-02 민간자본사업 보조(이전재원)	0		190,377	

〈표 2-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최근 3년간 예산변경 내역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사유
				감	증	
201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5,501,690	34,495		· 추가 지원 필요 아동 발생으로 인한 국고 보조금(증액) 변경, 그에 따른 시비매칭금 확보
	보호종료아동 주거 지원 통합서비스	307-05 민간위탁금	149,731		34,495	
201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5,467,195	1,074,677		·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예산부족(지역아동복지센터와 민간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실질임금 대비 편성 예산액 부족)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61,256,556		1,074,677	
202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8,193,438	15,000		· '20년 서울시아동공동생활가정지원센터 신규사업 추진에 따른 예산 부족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351,698		15,000	
202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8,178,438	59,525		· 2020년 확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을 위한 예산 변경사용(가족담당관-13400호,2020.6.24.)
	확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197,940		59,525	
202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05 민간위탁금	18,118,913	31,902		· 보건복지부 아동보호 전담요원 변경(증액) 내시로 시비 확보
	아동보호전담요원 총원(신규)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397,928		31,902	
202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79,383,565	750,000		· 그룹홈 특성상 시설의 잦은 신규설치 및 폐업, 종사자 이직 등으로 인건비 부족분 발생 변경
	요보호아동 그룹홈(공동생활 가정)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8,070,802		750,000	
202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79,717,341	120,000		· 복지부의 늦은 변경 내시로 추경 미반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매칭분 변경
	아동발달지원계좌 지원	301-01 사회보장적수 혜금	1,784,290		120,000	

(단위 : 천원)

연도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변경금액		변경사유
				감	증	
202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79,597,341	162,650		· 복지부의 낮은 변경 내시(인건비 부족)로 추경 미반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매칭분 변경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7,663,282		162,650	
2021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 조	79,434,691	51,126		· 복지부의 낮은 변경 내시(인력13명 증가)로 추경 미반영,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시비 매칭분 변경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308-01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289,926		51,126	

- 예산의 탄력적 사용을 통하여 아동 관련 사업의 인건비 및 시비 추가 부담분을 충당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으나, 동 사업의 경우 상당한 규모의 예산이 적재적소에서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불용된 점을 감안할 때, 지원시설 인건비, 관리운영비 및 생활 아동 지원에 대한 예산 규모 산출에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면밀한 추계가 반드시 필요함.

다) 반복적 불용 발생

- 동 사업의 최근 3년 간의 예산집행 현황내역을 살펴보면, 불용액은 2019년 4억원, 2020년 64억원, 2021년 94억원으로 불용액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2021년도에는 94억원으로 최근 3년간 불용액이 가장 크다는 점에서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2021회계연도 불용액 중 대부분은 아동생활시설에 대해 '21.0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에 따른 종사자 적시 미채용에 따른 인건비로, 추가 인력에 따른 인건비 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 확정이 6월 말에 이루어짐에 따라 정해진 기한내에 종사자 채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었다는 점은 인정되나, 시설종사자 채용이 (7월(62명), 9월(132명), 10월(12명), 11월(10명)) 월별 감소 추세로 예정 종사자 채용이 어려워 불용이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1년 8월말 11억원만 감추경 되었음. 연내사용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예상할 수 있는 불용에 대해서는 감추경을 통해 필요한 곳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임.

〈표 2-10〉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사업, 최근 3년간 불용사유

(단위 : 백만원)

연도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불용		
			불용액 (다)	불용률 (다)/(가)	불용사유
2019	76,960	76,529	370	0.6%	· 지원아동 수 감소(3,000→2,800)에 따른 시설 운영 추가보조금 불용
2020	86,660	80,270	6,390	7.4%	· 지원아동 수 감소(2,274→2,168)에 따른 시설 운영 추가보조금 불용, 근무제 변경(4조3교대→3조2교대)으로 교대근무자 인원 감축에 따라 인건비 감소와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 사업추진 불가
2021	95,385	85,949	9,436	9.9%	· 코로나19 장기화로 외부활동 사업추진 불가,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위한 종사자 적시 채용이 어려워 인건비 불용 발생(260명 채용계획 → 216명 실제 채용)

2) 예산 이월(사고이월)

- 예산의 이월은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조⁴⁾에 따른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 당해연도에 사용하지 않은 세출예산을 다음연도에 넘겨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이월에는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이 있음.
- 「지방재정법」 제50조제1항⁵⁾에 근거를 두고 있는 명시이월은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고,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로 넘겨 사용하는 것을 말하며, 사고이월은 「지방재정법」 제50조제2항⁶⁾의 규정에 따라 세출예산 중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 등에 대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 4) 「지방재정법」 제7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①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 5)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6)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표 2-11〉 사고이월과 명시이월 구분

구 분	명 시 이 월	사 고 이 월
이월단위	편성목 단위까지	편성목 단위
요구권자	자치단체의 장	부서(기관)의 장
승인권자	지방의회	자치단체의 장
요구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확정시기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회계연도 완료 후 30일 이내
기간연장	사고이월 가능	불가능

○ 2021회계연도 명시이월은 없으며, 사고이월은 총 4건, 18억 7,411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2>와 같음.

〈표 2-12〉 최근 3년간 사고이월 발생 현황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 2021년 총 4건, 18억 7,411만원						
2021	어린이집 상시 평가체제 운영	542,202	534,692	406,371	128,321	○ '21년 서울형 어린이집 공 인 평가 용역' 기한 연장 ('21.12.24. → '22.2.11.)으로 사고이월 필요 - 사유 : 어린이집 코로나 확 진자 발생에 따라 어린이집을 방문하는 서울형 현장실사 일 정지연에 따른 용역 완수기간 지연
2021	한부모가족복지 시설 기능보강	411,656	384,481	232,270	152,211	○ 용산구 한부모가족복지시 설(해오름빌)에서 2021년 1월 에 기능보강사업을 신청하여 10월 공사를 진행하는 것으로 예정하였으나, 공사 진행과정 중 가연성 단열재 및 가스배 관 철거 작업이 수반되어 시 설 입소자(영유아 포함)의 안 전을 위하여 동절기 이후 난 방 필요가 감소하는 시기로 공기 순연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2021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5,297,252	4,253,763	4,239,513	14,250	○4,5호 거점형 키움센터 실태 조사 용역이 2021. 10월 발주 및 12.1 계약체결되어 사고이월 필요
2021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균형 발전특별회계)	3,359,216	3,154,759	1,581,314	1,579,328	○ 4호(구로)센터는 2021년 1월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물주와 기존 임차인간 문제로 6월 임대차계약 완료, 8~11월 건축기획 추진, 12월 설계용역 계약완료에 따라 설계비 사고이월 ○ 5호(성북)센터의 경우 5~7월 건축기획 추진, 9~11월 설계용역 추진, 12월 공사계약하였으며,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 2020년 총 5건, 6억 5,273만원						
2020	세대별 1인가구 사회적결망 구축	2,004,052	1,861,158	1,597,283	263,875	서울시 1인가구 온라인플랫폼 구축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준공예정일: '21.7월)
2020	출생 축하용품 지원	6,471,813	5,609,151	4,739,393	22,586	서울 아동복지 백서 제작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준공예정일: '21.2월)
2020	아동친화도시 추진	1,721,209	1,692,523	1,656,523	36,000	서울시 아동권리보호 및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아동영향평가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준공예정일: '21.2월)
2020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1,159,890	1,125,899	1,054,627	71,272	서울시 아동인권증진 및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콘텐츠 개발 및 교육운영 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준공예정일: '21.3월)
2020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438,734	1,353,920	1,094,920	259,000	꿈나무마을 공간개선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용역의 준공기한 미도래(준공예정일: '21.8월)
◇ 2019년 총 5건, 57억 1,417만원						
2019	스페이스살림 건립 추진	19,515,953	19,456,713	16,161,086	3,295,627	스페이스살림 공사비 집행시기 미도래에 따른 예산 미집행으로 사고이월
2019	출생 축하용품 지원	7,875,949	6,764,658	4,566,945	2,197,713	계약기간이 '20.3월까지이므로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이월함
2019	아동친화도시 추진	790,000	767,169	700,960	66,209	서울특별시 아동 종합실태조사 용역' 과업보완 지시에 따른 기간연장 및 '2019년 아동영향 평가(시범) 용역' 준공기한 미도래
2019	지역아동보호전	5,002,244	4,994,457	4,899,742	94,715	서울시 공공형 아동학대예방

회계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사유
	문기관 운영지원					센터 설치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과업 보완 지시에 따른 사업기간 연장
2019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76,959,676	76,589,484	76,529,304	59,909	아동복지정책 기본계획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준공기한 미도래에 따른 사고이월 (계약일19.10.31/ 체결되어 9개월간 진행됨에 따라20.7월 말 용역준공기한이 도래)

◇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균특)’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사업은 일반형 키움센터, 지역아동센터 등 지역 내 초등 돌봄 기관운영을 보완하며 허브기능을 수행할 지역대표 키움센터를 설치·운영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7)에 따라 추진되고 있음.
- 동 사업의 2021회계연도 당초 예산액은 28억 1,091만원에서 전년도 명시이월액 5억 4,831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33억 5,922만원임. 이 가운데 15억 8,131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 15억 7,933만원을 명시이월하

7) 제7조(돌봄시설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돌봄 수요와 시설 공급을 적정하게 고려하여 돌봄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돌봄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우선적으로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돌봄시설의 운영을 적합한 요건을 갖춘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돌봄시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 따라 돌봄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부지 등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해당 돌봄 시설의 최초 운영권을 줄 수 있다.

여, 불용액은 1억 9,858만원으로 불용률은 5.9%로 나타남.

〈표 2-13〉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균특)’ 사업, 2021회계연도 결산조사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예산 성립 후 증감		예산 현액	지출액	사고 이월액	불용액	불용률 (%)
		명시이월	변경					
계	2,810,905	548,311	-	3,359,216	1,581,314	1,579,328	198,575	5.9
401-01 시설비	2,767,870	542,129	△48,068	3,261,931	1,542,436	1,523,550	195,946	6.0
401-02 감리비	36,825		54,278	91,103	38,578	49,896	2,629	2.9
401-03 시설부대비	6,210	6,182	△6,210	6,182	300	5,882	-	0.0

(나) 반복적인 이월 발생

- 동 사업은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를 위한 공간확정 이후 민간건물 임대차 계약 지연 등에 따라 센터 설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결과 시설비 등에 반복적인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바, 시민의 세금이 적기에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예산 편성 시부터 연내 사용가능성을 면밀하게 따져보고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추계를 통해 적극적인 사업집행을 추진해야 할 것임.
- 특히 공간 확보 및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점검하여 실제 필요예산을 추계하고 편성·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표 2-14〉 최근 3년간 거점형 키움센터 관련 명시이월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별	예산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명시 이월액	사고 이월액	이월사유
2021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3,359,216	1,581,314		1,579,3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호(구로)센터는 2021년 1월 임대차계약을 하고자 하였으나, 건물 주와 기존 임차인간 문제로 6월 임대차계약 완료. 8~11월 건축기획 추진, 12월 설계용역 계약완료에 따라 설계비 사고이월 - 5호(성북)센터의 경우 5~7월 건축기획 추진, 9~11월 설계용역 추진, 12월 공사계약하였으며,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사고이월
2020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5,068,231	3,579,667	633,182		3호 센터 임대차 계약이 7월 완료되어 설계용역 진행 중으로 '21년 공사발주 예정에 따라 이월
2020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4,816,938	2,327,875	1,424,000		'20.10.30. 기확정된 4호 공간이 '21.2월 계약 예정으로 해당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 이월
2019	거점형 키움센터 조성	3,500,000	372,213	3,127,78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 철거 필요 및 구조안전진단 시행 필요 등 예산편성당시 예상치 못한 사유로 공정이 지연됨에 따라 연내 공사발주가 어려워 공사비 이월 발생 예상 - 1호 거점형키움센터 설계 및 공사 일정변경에 따라 사무공간조성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비, 아동돌봄용 문구, 재료비 이월 필요 발생 (이월확정시 이월요구액 3,146백만원에서 연내 집행액 제외하고 이월 예정)

(다)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

- 거점형 뿐만 아니라 우리동네 키움센터 포함 관련 '21년 예산현액은 564억원으로 그 중 불용액은 91억원으로 나타남. 현장의 유희공간 부족과 공간발굴이 지연됨에 따라 센터 개소가 지연되어 해당 사업예산의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표 2-15〉 '21년 키움센터 예산 불용사유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불용사유
계	56,470	9,136	16.2%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4,774	1,024	19.3%	- 센터소개 지연 등으로 인한 불용발생 ※ 센터개소 지연 사유 : 공간발굴 지연, 설계 변경, 인근주민민원해소 등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26,670	3,230	12.1%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6,718	3,565	21.3%	- 현장의 유희공간 부족 등 물량발굴의 어려움 : 당초 55개소 목표였으나 51개소 선정 - 평균설치 면적 감소 : 예산편성 시 평균 설치면적을 192㎡로 예상했으나 실제 평균 설치면적은 151㎡임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3,500	957	27.3%	- 4호(구로) 센터(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21.1월→'21.6월)으로 인한 임차계약 지연)와 5호(성북)센터(공공유희시설 무상확보)의 임차료 및 임차보증금 불용 발생 - 3호(종로) 센터 개소 지연('21.7월→'21.10월)으로 인한 운영비 일부 불용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	1,449	162	11.1%	- 3호(종로) 센터 개소 지연('21.7월→'21.10월)으로 인한 인건비 일부 불용
거점형 키움센터 설치	3,359	198	5.9%	- 낙찰차액 등 발생

○ 특히 일반형을 포함한 키움센터 관련 최근 3년간 총 예산현액 1,548억 5,270만원 중 총 불용액 237억 6,949만원으로 나타남. 특히 공간선정 지연이나 공사 기간 연장 등에 따라 센터 설치가 제대로 추진되지 않은 결과가, 고스란히 사업의 집행에 영향을 미쳐 해당 사업예산의 불용과 이월이 연동하여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공간 확보 및 설치 가능 여부 등에 대해 보다 세밀하고 정교하게 점검하여 실제 필요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주의를 다해야 할 것임.

〈표 2-16〉 최근 3년간 키움센터 관련 불용액 내역

(단위 : 천 원)

연도별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 최근 3년간 총 예산현액 1,548억 5,270만원 중 총 불용액 237억 6,949만원							
2021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	5,297,252	4,239,513	14,250	18,972	1,024,517	19.3
2021	우리 동네 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26,760,419	23,241,055	-	289,223	3,230,141	12.1
2021	거점형 키움센터 운 영	3,500,355	2,543,248	-	270	956,837	27.3
2021	거점형 키움센터 운 영(인건비 지원)	1,448,767	1,281,953	-	5,304	161,510	11.1
2021	우리 동네 키움센터 돌봄인력 한시지원	1,563,480	1,527,120	-	10,908	25,452	1.6
2021	거점형 키움센터 설 치	3,359,216	1,581,314	1,579,328	-	198,575	5.9

연도별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2021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16,718,570	11,824,015	-	1,330,000	3,564,555	21.3
2020	거점형 키움센터 운 영	4,816,938	1,990,644	1,424,000	-	1,402,294	29.1
2020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2,460,941	2,143,884	-	26,085	290,972	22.4
2020	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인건비 지원)	15,118,615	11,202,241	751,248	344,850	2,820,276	18.7
2020	거점형 키움센터 설 치	5,068,231	4,160,331	548,311	-	359,589	7.1
2020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38,636,120	24,082,586	8,859,426	13,500	5,680,608	14.7
2019	다함께 돌봄(우리동 네 키움센터 운영)	6,849,799	3,337,319	-	246,029	3,266,451	47.7
2019	다함께 돌봄(우리동 네 키움센터 운영) - 설치	19,754,000	13,217,283	5,749,000	-	787,717	4
2019	거점형키움센터 조 성	3,500,000	372,213	3,127,787	-	66	0

3) 불용 과다 사업

- 예산의 불용은 의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의 동의 하에 편성된 예산을 집행과정에서 구체적인 명분이나, 적극적인 검토 없이 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무력화 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저해하는 행정편의적 양태로 평가할 수 있음.
- 특히 반복적으로 과다한 불용이 발생하는 사업의 경우, 그 불용사유가 집행의지가 없어서 업무를 지연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예산을 적시에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함으로써 소중한 재원을 사장(死藏)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지 못하고 재원을 합리적으로 운용하지 못한 점에 대한 해당 부서의 직무태만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하겠는 바, 이에 대한 엄정한 질책과 합당한 책임을 묻도록 함으로써, 안일한 직무 수행으로 인한 불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여성프리랜서의 돌봄고충해결 관련 실태조사’ 사업은 예산현액 5,000만원으로 ‘21.8. 학술용역 재심의 결과 부적정(조건부)으로 사업이 미추진되어 불용률은 100%로 나타남. 예산 편성 후에도 사업이 미추진으로 불용이 예상된다면 감추경을 통해 필요한 곳에 재원이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합리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하다 할 것임.
- 2021회계연도 불용액 20%이상 사업은 총 9건이며,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은 총 41건으로, 그 구체적인 내용은 <표 2-16> 및 <표 2-17>과 같음.

〈표 2-17〉 불용액 20%이상 발생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보조금 반납금 (다)	불용		
					불용액 (라)	불용률 (라)/(가)	불용사유
◇ 불용률 20%이상 사업 : 총 9건, 51억 1,523만원							
1	기본경비 (양성평등정책담 당관)	258,954	192,230	-	66,724	25.8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 해 대면출장 자제 등으로 집행잔액 발생
2	입양아동 가족지 원(자체)	98,000	34,500	-	63,500	64.8	○ 입양축하금 지원 아동 예상수요 75명으로 편성 하였으나 출산율 저하 및 경제난 등 입양 감소로 실 제 33명 지원 ○ 입양아동 교육비 지원 아동 예상수요 9명으로 편성하였 으나 실제 1명 지원으로 불용 발생
3	가정위탁아동 전 문아동보호비	126,000	9,750	46,500	69,750	55.4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 시행('21.3.)에 따라 예상수요 14명으로 추경 편성('21.7.)하였으나, 실 제 지원대상 3명 발생
4	가정위탁아동 아 동용품구입비지 원	14,000	3,000	4,400	6,600	47.1	학대피해아동 즉각분리제 도 시행('21.3.)에 따라 예상수요 14명으로 추경 편성('21.7.)하였으나, 실 제 지원대상 3명 발생
5	거점형 키움센터 운영	3,500,355	2,543,248	270	956,837	27.3	○ 4호 구로센터의 경우, 기존 임차인 퇴거 지연에 따라 임차비 불용 ○ 5호성북센터의 경우, 유희 공공시설무상확보에 따라 임 차보증금및임차료 불용
6	여성프리랜서의 돌봄고충해결 관 련 실태조사	50,000	-	-	50,000	100.0	'21.8. 학술용역 재심의 결과 부적정(조건부)으로 용역 미추진
7	기본경비(아이들 봄담당관)	81,282	51,488	-	29,794	36.7	정원 대비 현원 감소(29 명 → 26명)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보조금 반납금 (다)	불용		
					불용액 (라)	불용률 (라)/(가)	불용사유
8	국고보조금 반환 (아이돌봄담당관)	1,459,746	1,152,274	-	307,472	21.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9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균형발전특별회계)	16,718,570	11,824,015	1,330,000	3,564,555	21.3	자치구 유희공간 부족 및 엄격한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공간을 찾기 어려워 현장에서 발굴 어려움으로 인해 신규 확정 지체로 불용액 발생

〈표 2-18〉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현황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 불용액 1억원 이상 사업 : 총 41건, 776억 7,659만원								
1	안심귀가스카우트	5,538,640	5,324,786	-	-	213,854	3.9	스카우트 대원의 중도 포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 선발까지 일정기간 소요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2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지원	6,508,972	6,255,281	-	1	253,691	3.9	시설 종사자 변동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3	성매매피해자 구조지원	1,068,292	761,040	-	153,626	153,626	14.4	코로나 19 장기화로 시설 이용자 및 구조지원 대상자 감소에 따른 사업비 불용액 발생
4	성폭력피해상담소 운영지원	3,927,450	3,737,032	-	15,477	174,941	4.5	시설 종사자 변동으로 처우 개선비 등 인건비 잔액 발생
5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3,847,872	3,640,374	-	53	207,446	5.4	6개 해바라기센터 중 1개소(북부) 운영종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6	가정폭력상담소 운영지원	3,142,973	3,041,039	-	-	101,934	3.2	시설 종사자 변동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7	가정 폭력 피해 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3,323,030	3,201,995	-	6,283	114,752	3.5	보호시설 종사자 변동으로 인건비 집행잔액 발생
8	어린이집 운영 지원(자체)	66,966,359	66,689,491	-	-	276,868	0.4	어린이집 감소로 인해 공기 청정기 관리운영비 지원 집 행잔액 발생
9	어린이집 운영 지원(보조)	2,251,500	1,922,500	-	-	329,000	14.6	복지부 기준 변경(지원대상 감소)에 따른 감내시로 국비 최종내시액 감소
10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처우개 선 지원	152,059,847	149,758,311	-	-	2,301,536	1.5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이 용인원 감소 및 아동인구 감 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채용 부진으로 집행잔액 발생
11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322,975,393	319,344,706	-	-	3,630,687	1.1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이 용인원 감소 및 아동인구 감 소에 따라 보육교직원 채용 부진으로 집행잔액 발생
12	영유아 보육료 지원	627,891,823	595,802,513	-	-	32,089,310	5.1	코로나로 인한 어린이집 이 용인원 감소 및 아동인구 감 소에 따라 영유아보육료 집 행잔액 발생
13	특화보육 지원 (자체)	40,425,622	39,964,570	-	-	461,052	1.1	기타 연장(24시간 및 휴일) 어린이집 감소로 인한 집행 잔액 발생
14	어린이집 기능 보강(자체)	2,857,360	2,726,996	-	-	130,364	4.6	어린이집 투명마스크 구입 낙찰차액, 영유아 안전·감염 병 예방 및 건강관리 공모사 업 선정에 따른 지원후 잔액 발생, 서울형 신규공인 어린 이집 환경개선 지원대상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
15	자치구 가족센 터건립	3,600,000	3,500,000	-	-	100,000	2.8	균특회계 세수부족에 따른 국비 사고이월(100백만원) 을 반영한 국비 감액내시 통 보('21.12.23.)
16	아 동 친 화 도 시 추진	1,802,000	1,660,517	-	-	141,484	7.9	아동참여행사를 계획하였으 나 코로나19 상황악화 및 용역 2회 유찰(무응찰)됨에 따라 사업 정상추진 불가. '22년부터 위탁형식이 아닌 서울시 직영으로 사업 직접 수행 예정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17	아동복지시설 운영지원	95,384,547	85,948,721	-	-	9,435,826	9.9	o 민간위탁금 : 아동수 감소로 인한 종사자 인력 감축에 따른 인건비 감소 o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2021.7월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종사자 증원(260명) 예산편성하였으나, 시설별 인력 채용의 어려움(전체 사회복지시설 주52시간 적용에 따른 대량 채용으로 과수요)으로 적시에 채용하지 못하여 인건비 불용액 발생(7월 62명 채용, 9월 104명 채용, 9월 28명 채용, 10월 12명 채용, 11월 10명 채용)
18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지원	3,844,500	3,316,602	-	-	527,898	13.7	입소아동수 감소 및 코로나 감염병 관련 수학여행경비 등 외부행사 불가로 집행잔액 발생
19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4,233,000	3,879,300	-	223,201	130,499	3.1	보건복지부 예산편성 기준대상자 수 대비 실제 자립수당 지급 결정대상자 차이로 인해 집행잔액 발생
20	입양아동가족 지원(보조)	3,938,980	3,424,910	-	205,146	308,924	7.8	예산편성 시 전년도 수준 등 반영하여 1,783명 지원 예산하였으나 출산율 저하 및 경제난 등 입양 감소로 1,649명 지원
21	아동단독가구 및 가정위탁아 동 지원	4,380,106	3,753,735	-	-	626,371	14.3	o 지원대상 아동수 감소 (당초 900명 예산편성하였으나 795명으로 105명 감소)로 인한 집행잔액 - 양육보조금, 대학입학금, 아동용돈 등 집행잔액 466,371천원임 o 보건복지부 권고사업으로 전문가정위탁 10가정 편성하였으나 2가정 10백만원만 지원되어 160백만원 불용
22	한부모가족복 지시설 운영지 원	9,297,893	8,570,472	-	-	727,421	7.8	종사자 퇴사 등으로 적시 채용되지 못한 종사자 인건비 불용 발생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23	한부모가족 자 녀 양육비 등 지원	51,654,000	47,101,339	-	594,331	3,958,331	7.7	여성가족부 감액 변경내시 ('21.9./'21.10.)에 따른 집행사유 미발생
24	한부모가족 자 녀 교통비 등 지원	3,440,320	3,281,355	-	-	158,965	4.6	한부모가족 고등학생 자녀 대상 교육비 지원 사업으로, 21년 고등학교 전학년 무상 교육 실시에 따라 무상교육 미실시학교(자사고, 특목고 등) 재학생으로 지원대상이 축소되어 불용액 발생
25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907,520	620,020	-	143,750	143,750	15.8	청소년한부모 대상 자립지원 및 아동양육 지원 사업이나, 사업대상자인 청소년한부모 가 감소('20년 428명 → 21년 275명)하여 집행잔액 발생
26	아이돌봄 지원	45,658,010	41,619,915	-	-	4,038,095	8.8	여가부 변경내시(국비 감액) 에 따라 매칭비 불용액 발 생 및 낙찰차액 발생 등
27	우리동네 보육 반장 운영지원	1,306,215	1,200,833	-	-	105,382	8.1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보육 반장 퇴직 및 대면활동 기피 로 인건비(활동비, 교통비, 출장비 등) 집행 감소
28	우리동네키움 센터 운영	5,297,252	4,239,513	14,250	18,972	1,024,517	19.3	센터 개소지역으로 인한 운 영비 집행잔액 발생
29	우리동네키움 센터 운영(인건 비 지원)	26,760,419	23,241,055	-	289,223	3,230,141	12.1	센터 개소지역으로 인한 인 건비 집행잔액 발생
30	거점형 키움센 터 운영	3,500,355	2,543,248	-	270	956,837	27.3	o 4호 구로센터의 경우, 기 존 임차인 퇴거 지연에 따라 임차비 불용 o 5호성북센터의 경우, 유희공 공시설무상확보에따라임차보 증금및임차료불용
31	거점형 키움센 터 운영(인건 비 지원)	1,448,767	1,281,953	-	5,304	161,510	11.1	3호 종로 센터 개소 지연 (2021.7월 → 2021. 10 월)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 분 발생

(단위 : 천 원)

순번	사업명	예산현액 (가)	지출액 (나)	이월액 (다)	보조금 반납금 (라)	불용		
						불용액 (마)	불용률 (마)/(가)	불용사유
32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자체)	19,014,224	15,487,470	-	-	3,526,754	18.5	용역비 단가 절감으로 인한 잔액 및 낙찰차액, 단일임금 적용 개소수 감소
33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보조)	33,910,700	33,374,822	-	104,696	431,181	1.3	지역아동센터 이용아동 정원 감소에 따른 운영비 지원단 가 하락 및 휴·폐업 등 시설 수 변동으로 인한 불용
34	특성별 지역아 동센터 추가지 원	1,137,343	913,687	-	67,822	155,834	13.7	토요운영형 시설 실수요 미 달에 따른 지원비 불용(당초 복지부 사업량 배분 168개 소 → 실수요 109개소)
35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파견지원	6,917,246	6,159,311	-	228,447	529,488	7.7	아동복지교사에 대한 시설 수요 변동 및 중도 퇴사자 발생으로 인한 인건비 불용
36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3,702,353	3,453,668	-	-	248,685	6.7	여가부 변경내시(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3486, 2021.10.18)에 따라 구립 신규 시설 운영비 삭감(신규 개소 수요 없음)
37	지역아동센터 돌봄인력 한시 지원 사업	5,478,240	4,391,803	-	304,721	781,716	14.3	중도 퇴사자 발생 및 일부시 설 인력 미채용에 따른 인건 비 불용
38	국고보조금 반 환	1,459,746	1,152,274	-	-	307,472	21.1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사업 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 예 산 과다 편성에 따른 불용액 발생
39	국공립 어린이 집 확충(균형 발전특별회계)	40,000,000	38,282,676	-	-	1,717,324	4.3	확충비용이 비교적 적게 소 요되는 공동주택 관리동 어 린이집, 민간가정어린이집 장기임차 전환사업 등을 적 극 추진함에 따른 예산절감 (65개소 중 41개소)
40	거점형 키움센 터 설치(균형 발전특별회계)	3,359,216	1,581,314	1,579,328	-	198,575	5.9	o 2021.12월 4호 구로센 터 설계용역 계약에 따른 낙 찰차액 불용 o 2021.12월5호성북센터공 사,감리용역,폐기물처리용역 계약에따른낙찰차액불용
41	우리동네키움 센터 설치(균 형발전특별 회계)	16,718,570	11,824,015	-	1,330,000	3,564,555	21.3	자치구 유희공간 부족 및 엄 격한 입지 조건에 부합하는 공간을 찾기 어려워 현장에서 발굴 어려움으로 인해 신 규 확정 지체로 불용액 발생

◇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가) 사업 및 결산 개요

-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은 여성·청소년 등 범죄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귀가 지원, 우범 지역 순찰을 통한 안전도시를 구현하고 여성 신규일자 리 창출을 도모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시비지원 사업임.

〈표 2-19〉 2021년 안심귀가 스카우트 계획

- 지원기간 : '21년 3~12월(※ '21.1~2월은 전년도 대원으로 운영)
- 소요예산 : 5,619백만원
- 근무시간 : 주5일, 14시간(월 2시간, 화~금 3시간)
- 임금처우 : 월 899,640원(56시간 기준) 시급 10,710원('21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참여인원 : 500명
- 수행기관 : 서울시·25개 자치구·경찰 등
- 추진실적

2021년	• 안심귀가 스카우트 500명 -귀가지원 177,805건, 취약지 순찰 382,679건
2020년	• 안심귀가 스카우트 500명 -귀가지원 210,278건, 취약지 순찰 280,841건
2019년	• 안심귀가 스카우트 452명 -귀가지원 350,955건, 취약지 순찰 276,038건

- 동 사업의 2021회계연도 예산액은 56억 1,864만원으로 감추경액 8,000만

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55억 3,864만원이고, 이 가운데 53억 2,479만원이 집행되고 2억 1,385만원이 불용처리된 바, 불용률은 3.9%로 나타남.

〈표 2-20〉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2021회계연도 결산조서

(단위 : 천 원)

예산과목	예산액	추경액	예산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
계	5,618,640	△80,000	5,538,640	5,324,786	213,854	3.9
201-01 사무관리비	74,000		74,000	59,933	14,067	19
101-04 기간제근로자 등보수	5,544,640	△80,000	5,464,640	5,264,853	199,787	3.7

나) 반복적인 불용액 발생

- 동 사업의 경우 2019년 1억 3,786만원, 2020년 4억 182만원, 2021년 2억 1,38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불용 사유로는 매년 안심귀가 스카우트의 중도포기가 발생하여 인건비 불용⁸⁾이 반복되고 있으며, 중도퇴직자 비율은 19년 74명(16.4%), 20년 58명(11.6%), 21년 56명(11.2%)로 3년 평균 62명이 넘는 스카우트가 중도 퇴직하였음.
- 동 사업은 매년 스카우트 대원의 중도포기라는 반복적인 불용사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데, 중도포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여 그에 맞는 예산규모를 편성하여 불용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8)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지적되었음.

〈표 2-21〉 최근 3년간 집행잔액 현황

(단위 : 천 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집행잔액 사유
2021	5,538,640	5,324,786	213,854	3.9	- 스카우트 대원의 중도 포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 선발까지 일정기간 소요 및 야간근로수당 미지급(코로나 검사, 백신 접종, 확진자 발생 등)에 따른 인건비 감소
2020	5,691,240	5,289,418	401,822	7.1	- 사업 중 스카우트 대원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해 추가 선발까지 기간이 소요되어 집행잔액 379백만원 발생 - 스카우트 대원 근무복 등 구매비용 절감 22백만원
2019	4,866,688	4,728,833	137,855	2.8	- 스카우트 대원 중도포기로 인한 인건비 불용

〈표 2-22〉 자치구별 안심귀가 스카우트 중도퇴직자 현황

(단위: 명, %)

연번	자치구명	'19년			'20년			'21년		
		배정인원	중도퇴직	비율	배정인원	중도퇴직	비율	배정인원	중도퇴직	비율
계		452	74	16.4	500	58	11.6	500	56	11.2
1	종로구	11	5	45.5	14	5	35.7	14	2	14.3
2	중구	17	1	5.9	20	0	0.0	16	0	-
3	용산구	13	4	30.8	13	5	38.5	13	1	7.7
4	성동구	23	1	4.3	23	1	4.3	19	2	10.5
5	광진구	11	2	18.2	13	3	23.1	13	7	53.8
6	동대문구	21	3	14.3	21	1	4.8	17	1	5.9
7	중랑구	17	5	29.4	17	1	5.9	17	2	11.8
8	성북구	23	6	26.1	26	3	11.5	27	4	14.8
9	강북구	25	8	32.0	25	2	8.0	25	2	8.0

연번	자치구명	'19년			'20년			'21년		
		배정인원	중도퇴직	비율	배정인원	중도퇴직	비율	배정인원	중도퇴직	비율
계		452	74	16.4	500	58	11.6	500	56	11.2
10	도봉구	15	3	20.0	17	2	11.8	16	2	12.5
11	노원구	17	0	0.0	19	1	5.3	20	1	5.0
12	은평구	21	1	4.8	23	4	17.4	24	0	-
13	서대문구	17	1	5.9	17	1	5.9	15	1	6.7
14	마포구	11	0	0.0	14	3	21.4	15	1	6.7
15	양천구	13	1	7.7	15	1	6.7	11	0	-
16	강서구	13	5	38.5	18	3	16.7	21	4	19.0
17	구로구	21	0	0.0	24	1	4.2	24	0	-
18	금천구	25	3	12.0	27	3	11.1	24	5	20.8
19	영등포구	17	1	5.9	20	1	5.0	21	2	9.5
20	동작구	25	0	0.0	25	1	4.0	25	2	8.0
21	관악구	23	7	30.4	25	5	20.0	29	3	10.3
22	서초구	26	8	30.8	29	5	17.2	32	0	-
23	강남구	11	1	9.1	16	5	31.3	19	9	47.4
24	송파구	15	6	40.0	18	1	5.6	22	5	22.7
25	강동구	21	2	9.5	21	0	0.0	21	0	-

- 또한 동 사업과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에서 추진 중인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간에 우범지대 순찰 등 활동내용 및 활동구역에 중복소지가 있는 바, 사업 통폐합 등을 고려하는 등 예산이 필요한 사업에 적재적소에서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표 2-23〉 안심귀가스카우트 및 안심마을보안관 사업 간 비교표

구 분	안심귀가스카우트	안심마을보안관
사 업 참여자	주로 50~60대 여성 등	평균 53세 중년 남성 등 (전직 경찰 등 신임경비교육 전원 이수함)
활동시간	주 5일 / 월 56시간 - 월(22시 ~ 24시) - 화~금(22시~익일 1시)	주 5일 / 월 100시간 - 월~금/ 21시 ~ 익일 2시30분
활동내용	여성·청소년 대상 귀갓길 동행 서비스 및 우범지대 순찰	범죄취약지역 중심으로 도보 순찰 및 범죄예방 활동
활동구역	주로 지하철역에서 도보10~15분 거리 주변 구역 순찰 및 동행	1인가구 밀집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15개 구역(서울경찰청 협조) 중심 순찰
운영규모	340명(2인 1조)	63명(1구역당 4명 배치, 5개구역당 지역장 1명)
기 타	신청에 의한 동행서비스 지원	시간별 구역 순찰 및 생활안전 활동

3. 기금 운영 관련

가. 기금운용 결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기금은 ‘성평등기금’ 1종이 운영 중임. 동 기금의 2021년도 말 현재 조성액 총액은 235억 1,42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말 현재액(243억 4,110만원)에서 2021회계연도에 3억 7,440만원이 조성되고, 이 가운데 12억 131만원을 사용하고 남은 것으로 전년대비 8억 2,690만원이 줄어들었음.

〈표 3-1〉 2021년도 성평등기금 조성 총괄표

(단위 : 천 원)

기금명	전년도말 조성액 (①)	2021년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⑤=①+②)
		계 (②=③-④)	조성액 (③)	사용액 (④)	
계	24,341,103	△826,904	374,403	1,201,307	23,514,199

- 2021년도 동 기금 운용에 대한 구체적 운영내역을 살펴보면, 수입의 주요 원천은 ‘예탁금원금회수(39.6%)’와 ‘예치금회수(35.7%)’, 그리고 ‘이자수입(23.8%)’로 구성되고,
 - 지출은 주로 ‘비용자성사업비(고유목적사업비)(78.2%)’와 ‘예치금(20.7%)’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남.

〈표 3-2〉 2021년도 성평등기금 운용내역

(단위 : 천 원)

수입			지출		
구분	금액	비율(%)	구분	금액	비율(%)
계	1,515,506	100	계	1,515,506	100
전입금	-	-	비용자성사업비 (고유목적사업비)	1,184,216	78.2
용자회수	-	-			
예탁금원금회수	600,000	39.6	기본경비	17,091	1.1
예치금회수	541,103	35.7	예치금	314,199	20.7
이자수입	361,415	23.8			
기타수입	12,988	0.9	예탁금	-	-

나. 기금운용에 대한 검토의견

1) 기금 활용의 효율성 및 운용 적합성 제고

- ‘성평등기금’은 「지방자치법」 제1599),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10) 및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11)에 따라 남녀평등의 촉진과

- 9) 「지방자치법」 제159조(재산과 기금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현금 외의 모든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과 권리를 말한다)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재산의 보유, 기금의 설치·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0) 「양성평등기본법」 제42조(기금의 설치 등) ⑤ 지방자치단체는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양성평등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11)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 제39조(기금의 설치) ① 시장은 성평등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등 여성발전을 위한 정책의 추진을 위한 목적으로 1996년에 설치되었음.

- 2016년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의 개정으로 기금의 명칭이 ‘여성발전기금’에서 현행 ‘성평등기금’으로 변경된 바 있음.
- 기금 운용에 있어 고유목적사업의 비율이 높을수록 기금이 효율적으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기금이 고유목적 사업에 시의적절하게 사용되지 않거나 미진하게 사용되면서, 관련 기금을 은행금고와 재정투융자 기금에 과도하게 예치·예탁하는 것은 효율적 예산운용에 있어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임.
- 최근 5개년 동안의 성평등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고유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기금 활용의 효율성이 개선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3〉 연도별 성평등기금 운용내역 내역(지출)

(단위 : 천 원)

기금	지출액						
	계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예탁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2017	1,149,346	899,475	78.26%	15,184	1.32%	234,687	20.42%
2018	1,363,617	839,019	61.53%	18,523	1.36%	506,075	37.11%
2019	1,676,288	1,016,322	60.63%	19,450	1.16%	640,516	38.21%
2020	1,661,480	1,105,249	66.52%	15,129	0.91%	541,103	32.57%
2021	1,515,506	1,184,216	78.14%	17,091	1.13%	314,199	20.73%

기금	지출액						
	계	고유목적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예탁금	
		금액	비율	금액	비율	금액	비율
평균	1,473,247	1,008,856	68.48%	17,075	1.16%	447,316	30.36%

- 한편 2021회계연도 고유목적사업비의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성평등기금의 용도¹²⁾에 다소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임.
-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 지원사업”의 경우, 「서울특별시교육청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조례」에 따른 사업으로 성평등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을 통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됨.

〈표 3-4〉 최근 3년간 고유목적사업비 집행내역

(단위 : 천 원, %)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률	사업내용 및 실적
2021	계	1,235,000	1,184,216	4.1%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000,000	989,335	1.1%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성평등 사업 지원(1개 단체당 최대 3천만원) (추진실적) - 5개 분야, 50개 단체, 총 999백만원 지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컨설팅	50,000	44,172	11.7%	(사업내용)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 12)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40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성별을 이유로 한 차별철폐,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참여 확대 등 성평등촉진 사업
 2. 제30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여성관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이 조례를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률	사업내용 및 실적
					역량강화교육, 자문, 현장 모니터링, 평가 등 (추진실적) - 사전자문 및 공동워크숍, 역량강화교육 - 방문 자문 및 회계 모니터링 등 컨설팅 - 최종결과보고서 1종 발간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5,000	5,479	84.3%	(사업내용) - 성평등 문화에 대한 시민 관심 제고를 위한 다양한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추진 (추진실적) ※코로나19로 행사 취소 및 축소 - 제18회 성평등상 시상식 · 일시장소 : '21.9.1.(수), 신청사 8층 간담회장1 · 시상 : 총 6명(대상1, 최우수상2, 우수상3)
	2030 청년 성평등교육 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80,000	80,000	-	(사업내용) - 성평등에 관심 있는 2030 청년세대를 성평등 교육활동가로 양성 (추진실적) - 기초강좌 14강, 교수학습워크숍 5강, 강의 시연 등 6강 - 18명 수료, 교육만족도 4.8/5.0
	여성폭력 실태조사	20,000	19,000	5%	(사업내용) - 최근 3년간 서울시 여성폭력(성폭력가정 폭력 데이트 등) 실태와 지원체계 대한 현 황 조사 (추진실적) - 200부 제작, 가정폭력 등 관련 기관 배포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 지원	50,000	46,230	7.5%	(사업내용) - 학교 내 화장실 등을 대상으로 교육청·경찰청과 불법 촬영 합동점검 추진 (추진실적) - 서울시 관내 1,331개교 점검 지원
	계	1,200,219	1,105,249	7.9%	
2020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000,000	937,349	6.3%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성평등 사업 지원(1개 단체당 최대 3천만원)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률	사업내용 및 실적
					(추진실적) - 5개 분야, 50개 단체, 총977백만원 지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컨설팅	30,000	28,500	5%	(사업내용)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역량강화교육, 자문, 현장 모니터링, 평가 등 (추진실적) - 사전자문 및 공동워크숍, 역량강화교육 - 방문 자문 및 회계 모니터링 등 컨설팅 - 최종평가보고서 1종 발간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 기념 공모사업	120,219	89,400	25.6%	(사업내용) - 일본군 '위안부' 기림의 날을 널리 알리기 위한 전시·공연 프로그램 등 사업 공모·지원(1개 단체당 최대 3천만원) (추진실적) - 3개 단체, 총 89백만원 지원
	아동·청소년 디지털 성범죄 긴급신고·상담사업	50,000	50,000	-	(사업내용) - 아동, 청소년 긴급신고 및 상담창구마련 - SNS 가해자 모니터링 및 신고, 고발 등 (추진실적) - 긴급신고·상담창구 신설 및 운영 : 107건 - 가해자 모니터링 및 신고 : 1,909건, 고발 50건
	계	1,072,980	1,016,322	5.3%	
2019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957,980	903,889	5.6%	(사업내용) - 공모를 통한 민간단체 성평등 사업 지원(1개 단체당 최대 3천만원) (추진실적) - 7개 분야, 50개 단체, 총924백만원 지원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평가	30,000	27,934	6.9%	(사업내용) -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선정단체 대상 역량강화교육, 자문, 현장 모니터링, 평가 등 (추진실적) - 사전자문 및 공동워크숍, 역량강화교육 - 방문 자문 및 회계 모니터링 등 컨설팅 - 최종평가보고서 1종 발간

구분	사업명	예산액	집행액	불용률	사업내용 및 실적
	제5회 아시아여성학회 국제학술대회	50,000	49,499	1%	(사업내용) - 슬로건 : 아시아 성평등의 새로운 도전 - 개회식, 강연, 기획주제발표, 서울시 성평등 정책발표 등 (추진실적) - 참석인원 : 내·외국인 320여 명 - 발표논문 : 213개 (강연 2회, 기획주제 44개, 대학원생 논문 등 167개)
	일본군 '위안부' 기림비 설치사업	35,000	35,000	-	(사업내용) - 기림비 설치(운반, 바닥공사), 제막식, 홍보(지하철 역사 등 홍보물 제작) (추진실적) - 기림비 설치 및 제막식 개최, 대시민 홍보

- 특히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 지원”사업은 2021년 기금운용계획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업으로 의회의 심의를 받지 않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추진한 사업임.

〈표 3-5〉 2021년 기금운용 계획 변경 내역

구분	변경내용	금액
1차 변경 (‘21.2월)	· 성평등주간 기념행사	35백만원
	· 2030 청년 성평등교육 활동가 양성 및 활동지원	80백만원
	· 여성폭력 실태조사	20백만원
2차 변경 (‘21.8월)	· 학교내 불법촬영 예방 점검활동 지원	50백만원

- 기금은 「지방자치법」 및 기타 법령과 조례를 근거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운영됨. 일반회계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고 집행해야 하지만 기금은 그 운용에 있어서 집행부의 자율성이 폭 넓게 인정되고, 집행부의 의지에 따라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 또한 상당수 기금이 정책사업의 지출금액 20% 범위 내에서 의회의 의결 없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고, 정책사업 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항목간 변경이 허용되고 있어 의회의 통제를 받지 않는 수단이 될 우려가 있음.
- 이에 기금이 목적 외로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기금운용계획 단계에서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수하고,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은 최소화해야 할 것이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시 반드시 법정 절차를 준수하여 적정하게 관리·운용되어야 함.

2) 기금 운용 건전성 개선 및 재원확보의 한계

- 기금의 고유목적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기금확충 재원이 안정적이어야 하나, 성평등기금은 지속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예탁금원금 회수를 통해 기금이 운용되고 있음.

〈표 3-6〉 연도별 성평등기금 운용내역(수입)

(단위 : 천 원, %)

구분	수입액						
	계	전입금	용자회수	예탁금 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이자수입	기타수입
2017	1,149,347 (100.0)	600,000 (52.2)	- (-)	- (-)	186,144 (16.2)	363,203 (31.6)	- (-)
2018	1,363,617 (100.0)	600,000 (44.0)	- (-)	100,000 (7.3)	234,687 (17.2)	428,930 (31.5)	- (-)
2019	1,676,288 (100.0)	600,000 (35.8)	- (-)	- (-)	506,075 (30.2)	566,989 (33.8)	3,224 (0.2)
2020	1,661,480 (100.0)	600,000 (36.1)	- (-)	- (-)	640,517 (38.6)	419,883 (25.3)	1,080 (0.1)
2021	1,515,506 (100.0)	- (-)	- (-)	600,000 (39.6)	541,103 (35.7)	361,415 (23.8)	12,988 (0.9)
평균	1,473,248	600,000	-	350,000	421,705	428,084	5,764

- 2020회계년도 서울시 기금운용 성과분석 보고서(2021.12)에 따르면 성평등기금은 기금운용의 건전성 지표인 일반회계 전입금 타회계 의존율이 높아 전년도에 개선권고를 받았으며, 집행부는 조치계획으로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은 자체재원 조성을 확대하고, 자체재원이 없는 기금은 불필요한 사업 편성을 지양하여 전입금 규모 축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음.

〈표 3-7〉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운용의 건전성 (타회계 의존율)	일반·기타특별회계 전입금이 기금 수입 총액의 10% 이상인 기금은 수입구조 개선조치 필요	성평등기금	자체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기금은 자체재원 조성을 확대하고, 자체재원이 없는 기금은 불필요한 사업 편성을 지양하여 전입금 규모 축소
		체육진흥기금	
		사회투자기금	
		사회복지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 이와 관련하여 2021회계년도에는 일반회계 전입금 대신 예탁금원금회수(6억원)를 통해 기금수입을 운용하였으나 이는 기금의 건전성을 개선하기보다는 서울시 재정부족을 사유로 편성한 것으로 2022년에는 다시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6억원을 편성하였음.
- 즉 성평등기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기금이라는 예산운용방식을 빌어 해당 고유목적사업을 편성·집행하고 있는 측면이 있는 바, 이러한 재원 조달방식은 기금의 자주성과 안정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기금운용 및 사업 수행에 내실화가 필요함.
- 또한 성평등기금은 기금의 원금이라 할 수 있는 예탁금을 1999년까지 100억원, 2007년까지 200억원을 조성해 이후 240억원대를 유지하고 있었으나¹³⁾, 최근 지속적인 이자수입 감소 및 코로나19로 인한 서울시 재정

13) 공주, 강희영, 최희주(2020), “서울시 성평등기금 운영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pp. viii,

악화 등으로 인해 2018년에 1억원, 2021년에 6억원의 예탁금원금을 회수하여 지출하고 한 바, 2021년말 예탁금은 232억원으로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동 기금의 재원확보에서 한계가 노출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 3-8〉 2021년말 성평등기금 조성규모(자산)

(단위 : 백만원)

'21년 총조성액		'21년 총사용액		순 조성
24,715		1,201		23,514
전년도말 조성액 24,341	-	사업비 1,184	=	예치금 314
당해연도 조성액 374		기타지출 17		예탁금 23,200

- 한편 성평등기금의 존속기한이 2022년 12월 31일까지로¹⁴⁾ 기금의 존치 여부와 관련하여 성평등기금이 갖는 상징성은 일정 정도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동 기금에서 추구하는 설립목적은 일반회계 운용의 취지와도 부합하며 기금사업에서 이루어지는 공모사업 또한 일반회계를 통해 추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재정운용의 투명성 등을 위하여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14)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 조례」제39조의2(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